

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역의 위기가 지속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,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지역과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내용 (안 제5조)
- 우대 및 지원중단 (안 제6조)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보건소 등 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(안 제12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여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내용 (안 제5조)
- 우대 및 지원중단 (안 제6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,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의 경감을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